

條例(案) 檢討報告書

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주요 법적근거

◎ 지방자치법

○ 제125조 제1항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(개정 '99. 8. 31)

◎ 지방재정법

○ 제41조(세입·세출결산의 작성) - 세입·세출의 결산은 세입·세출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,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

1. 세 입

- 가. 세입예산액
- 나. 징수결정액
- 다. 수납액
- 라. 불납결손액
- 마. 미수납액

2. 세 출

- 가. 세출예산액
- 나. 전년도 이월액
- 다. 예비비사용액
- 라. 전용등 증감액
- 마.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

바. 예산현액

사. 지출액

아. 다음 연도 이월액

자. 불용액

○ 제110조 제3항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(개정 '99. 8. 31)

◎ 지방재정법 시행령

○ 제38조 제1항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00. 1. 12)

2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,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기금결산 작성일자와 의회제출 시한을 개정하려는 것이며,
- 이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등에 관한 조례에 내용이 같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영·관리조례의 5개 조례를 기금결산에 관련된 일자 및 시한을 본 조례 개정조례 부칙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